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긴급복구공사’ 정의 규정 이동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 확대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8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제221748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긴급복구공사’ 정의 규정 이동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 확대 (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3

I.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제221748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6. 3.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전에 실시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문 구성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개념인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단서).

가. ‘긴급복구공사’ 정의 규정 이동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 확대(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illegible]

현행	개정안
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u>긴급복구공사</u>”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¹⁾는, ‘지하안전평가’를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14조 및 현행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²⁾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2)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와 현행법 제23조 및 현행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³⁾에서 굴착공사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② 삭제 <2022. 1. 25.>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1은 p.16. 참고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는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는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해당됨.

【지하안전평가 및 대상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대상사업 비교】

지하안전평가 및 대상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대상사업
○지하안전평가 - <u>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u>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u>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u>하는 것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u>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u>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다음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함. <대통령령> ①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 사업 ②터널공사 수반 사업 ※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1】(p.16) 참고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함. <대통령령>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수반 사업 ※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1】(p.16) 참고 -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별표1은 p.16. 참고

지하안전평가 및 대상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대상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23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제1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23조4)는 제1항 본문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로 정의하고,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5)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긴급 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⁶⁾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도평가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⁷⁾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하시설물 복구 등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⁸⁾ 절차를 생략하되 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것임.⁹⁾¹⁰⁾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2016.1.7. 제정, 2018.1.1. 시행)

8) 2021.7.27. 법 개정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지하안전평가’로 변경함.

9)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15.11.13.), p.58.

…지하시설물 복구 등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되 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 위험도평가를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15461호,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p.22.

상·하수도관 복구 등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사전 절차(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 완료 후 안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지반 침하 위험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15461호, 박인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수정안 및 체계자구심사 주서본 중 발췌

수정주요내용

라.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되, 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안 제35조제1항).

수정안조문대비표 및 체계자구심사 주서본

원 안	수 정 안	체계자구심사 주서본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 ----- ----- ----- -----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수정안과 같음)

그런데, ‘긴급복구공사’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3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요건 중 하나인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¹¹⁾가 현행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원 안	수 정 안	체계자구심사 주서본
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 ----- ----- ----- ----- 다 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u>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u>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 ----- ----- ----- ----- ----- ----- ----- ----- -----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3. (수정안과 같음)

11) 제3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에서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

사업의 긴급복구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깊이 10미터 미만인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도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²⁾

실제로, 2025년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에 굴착깊이 10미터 미만인 긴급복구공사에 대해서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굴착깊이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현행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복구공사가 현행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밝힌 바 있음.¹³⁾

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자구수정되었음.

1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긴급복구공사 시 지하안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대상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굴착깊이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긴급복구공사’의 정의를 제2조(정의)로 이동하여 규정함으로써,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제1항제1호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복구 등의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절차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생략하고 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도록 한 것임.¹⁴⁾

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달리 긴급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해석례(법제처 25-0755, 2026.2.3.)

“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14) 제3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에서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자구수정되었음.

복구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대상이 소규모 지하안전
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집행하도록 하여 법 조문 체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굴착깊이 10미터 미만 긴급복구공사’까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의 효과 및 그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⁵⁾

둘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구광역시)
에서는 상하수도 관로 파열 등 일상적 응급조치 등에도 지반침하위험도
평가가 의무화되어 실효성 및 재정부담 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굴착깊이 10미터 미만 긴급복구공사’
전체에 대한 일률적 적용 여부 및 비용 등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 규정을 제2조(정의)로 이동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다만 굴착

15)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긴급복구공사 제도 도입 취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깊이 10미터 미만 긴급복구공사 완료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와 관련해서는 ①긴급복구공사 제도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긴급한 복구 시행이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사전절차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②굴착깊이 10미터 미만인 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와 평가항목이 유사¹⁶⁾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도 굴착깊이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긴급복구공사(상하수도 관로 파열 등 일상적 응급조치 등)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투입 재정 및 행정력 대비 실효성이 낮고,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임.

1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시험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나.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	가.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내시경카메라 조사
지반안전성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10

문 의 처
02)6788-5591

**참
고**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발췌〕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 도시의 개 발 사 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산업입 지 및 산 업 단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지의 조성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 사업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4. 항만의 건 설 사 업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 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은 제외한다.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사업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5. 도로의 건 설 사 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 의 개발 사업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 업 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 치사업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사업
7. 철도 (도시철 도를 포 함 한다) 의 건설 사업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8. 공항의 건 설 사 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사업

개 발 사 업	
10. 관광 단지의 개발사 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 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 업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 설의 설치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 육시설의 설치사업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13. 폐기 물 처 리 시설 의 설 치사업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 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 업
14. 국방 · 군사 시설의 설치사 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 사시설사업
15. 토 석·모 래·자 갈 등 의 채 취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16. 건축 물 설치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